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1
----------	-----

2019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4일, 강대호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대호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정을 제안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건축물과 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등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나. 제안배경

-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하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다. 검토의견

1) 정의,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안 제2조~제4조)

-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로 하며, 태양광 설비의 설치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공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 안 제3조 중 신·재생에너지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이후 용어 축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 표현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적용대상을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태양광 설비는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에도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 취지 달성을 위하여 자치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u>신·재생에너지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u> ② (생략)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u>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u> 2. (생략)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u> 2. (제정안과 같음)

2)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안 제5조~7조)

- 태양광 설비 설치시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둬으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안전성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꾀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에게 구조적·전기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 안전 및 재산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한편,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연구 용역비를 1억 3천만원 추계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용역비를 반영해야 할 것임.

3) 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안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시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 제8조의 내용에 맞게 제목 중에 “권장”을 “권고”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며, 제2항 중 태양광발전사업 설비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도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 ① (생략)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5) 시행규칙 관련(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종합의견

-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 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 등의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1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방음벽, 정수센터 침전지 상부 등의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4조)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 삭제함(안 제8조)
- 이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호 중 “산하 공공건축물”을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권장”을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대상 시설”로 한다.

안 제10조 중 “사항”을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u>신·재생에너지</u>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u>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산하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비</u></p> <p>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p>	<p>제4조(적용대상) ----- ----- -----.</p> <p>1. ----- 및 <u>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u> -----</p> <p>2.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되는 태양광 설비</p> <p>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p>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장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중 <u>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u>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p>	<p>제5조(책무)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안전성 확보)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 -----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수 있다.</p> <p>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 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제 정안과 같음)</p> <p>제10조(시행규칙) ----- -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p>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토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2.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성 확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